

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12. 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21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12. 6)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)

가. 개정이유
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(2004.12.23) 및 동법 시행령(2005.6.23)이 개정되어 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 등을 예방하고,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허가대상 광고물 중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표시하는 광고물,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하는 광고물, 연립간판 등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· 설명서 · 설계도서 제출을 면제토록 함(안 제2조)
-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, 세로형광고물,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현행 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”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에 “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”을 추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)
- 법 제4조 및 영 제12조 ·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특정구역을 지

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·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(안 제8조, 제22조)

-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“옥상간판·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·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·창문이용 광고물·세로형간판·공연간판·현수막·벽보의 표시방법, 전단의 배부방법,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”에 대하여 현행 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”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음 (안 제9조~16조, 제18조 및 20조)
-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: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·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(안 제21조)
-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심의대상을 완화함 (안 제24조제1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 論 要 旨 (없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